



제1750호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6 1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2 6 2 호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4
- 공 고 제 2 6 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식 품 위 생 과 22
- 공 고 제 2 7 6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23
- 공 고 제 2 8 0 호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민 원 봉 사 과 24
- 공 고 제 2 8 3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및 압류 예고 통지 (2차)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34
- 공 고 제 2 8 5 호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노 인 장 애 인 과 36

고 시

- 고 시 제 1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46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2. 3. ~ 2023. 2. 17.(15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고*석	인천86바**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필	인천83바**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묵	인천85바**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열우물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유*문	인천83사**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전*정	인천84바**53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정*성	인천81바**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지*섭	인천86바**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9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2. 3.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62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추가로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일 자리 정 책 과

2023. 2. 3.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일자리정책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2736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3.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청년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는 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 위탁추진 근거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시설

시설명	논현동 청년창업지원센터		만부마을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소재지	논현동 588-2		만수로 120 2~3층 (2개층)
	상가동 2~3층	1602동 1층	
규 모	1,042.64㎡ (315.4평)	289.81㎡ (87.66평)	351.9㎡ (106.44평)
시설규모	입주기업 15개	공유회의 및 미팅룸 커뮤니티 시설	입주기업 8개 (2층 4개, 3층 4개)
주요시설	공유공간, 회의공간 팍랩실 등		공유공간, 회의공간

<위치도>



-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1년 9개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사업비 : 857,100천원(2023.4~2024.12, 1년 9개월)
- 위탁내용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 4차 산업을 주도할 기술혁신형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 참고 자료

- 붙임1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 붙임2 : 관련법령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민간위탁예산(안)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4월~2024년 12월(1년 9개월)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12월 (1년 9개월)
- 발생비용 : 857,1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장 최 용 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9개월)	2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세 출		363,600	493,500	857,100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63,600	493,500	857,100	
재원 조달		363,600	493,500	857,1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63,600	493,500	857,100
	지방세		363,600	493,500	857,1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채무부담, 민자 등)					

※연도별 인상을 약 5%로 가정함

비용 세부 추계표(2023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인건비(종사자6명), 운영비, 사업비, 기타		363,600
인 건 비	[기본급] 121,650천원 [제수당] 13,805천원 [4대보험] 17,100천원 [퇴직적립금] 15,533천원 * 센터장 비상근	인건비 (9개월)	168,088
운 영 비	[시설및운영비] - 관리비 및 공공요금 63,000천원 - 무인경비 : 4,455천원 - 장비임차비 : 9,900천원 -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 3,150천원 - 일반수용비 : 18,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1,800천원 - 물품구입비 : 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3,000천원 - 홍보비 : 5,000천원	시설운영비 (9개월)	113,305
사 업 비	[청년창업역량강화] 10,500천원 [청년네트워킹활성화] 19,00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29,500
기 타	[위탁수수료] 5% 이내 + [부가가치세]×10%		52,707

[참고자료 1]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선정 계획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꿈꾸는 청년 창업마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 위탁 운영 단체(법인)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남동구 민선8기 공약사항 2-4-②(강소기술)업 육성 및 청년창업지원 확대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II. 추진방향

- 위탁기간 만료(3.31.)에 따른 공모추진으로 다양한 단체(법인)의 운영 참여 유도
- 창업전문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입주공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창업네트워킹 행사 및 홍보 등으로 역동성 있는 플랫폼 구성
- 다수의 이용객 유치로 창업 공간 운영 활성화 도모

Ⅲ. 위탁개요

청년창업지원센터 現 위탁현황

- 위 탁 명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관 :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대표자 정윤희)
- 위탁기간 : 2021. 4. 1. ~ 2023. 3. 31. (2년)
- 위탁예산 : 445,000천원(2022년 기준)
- 위탁사무
 -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운영
 - 창업 커뮤니티 환경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 창업지원 관련 교육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1] 위탁개요

- 위 탁 명 : 남동구 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1년 9개월)
 - ※ 사업비 정산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위탁기간 변경(사업종료시기 : 기존 3월말 → 12월말로 변경)
 - ※ 사업수행의 성실도 및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 검토 할 수 있음
- 위탁사업비 : 363,600천원 범위 내('23. 4. ~ 12.)
- 인력구성 및 조직
 - 기준인력 : 5~6명 이상(논현동 4~5명, 만수동 1명)
 - 신규채용, 또는 기존인력 사업 참여 등에 따라 인건비 탄력적 편성
- 운영시간 : 월~금(10:00~19:00), 토일공휴일 휴무 / 대관운영(10:00~21:00)
 - ※ 입주업체는 24시간 사용 가능, 야간 휴일 시간대 관리방안 제안서에 포함
- 시설현황
 - 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인천 남동구 은봉로 297, 1602동 1층 및 별동 2 ~ 3층
 - 규 모 : 1,332.45㎡(403평)

- 주요시설 및 용도

구분	주요시설	비고
공유공간	커뮤니티 광장, 공유OA	1602동 1층
커뮤니티공간	꿈마을 교육실, 커뮤니티 미팅룸(1)	
회의공간	대회의실(1), 미팅룸(2)	별동 2층
팝업실 등	3D프린터, 촬영스튜디오, 영상디지털기기	
기타시설	창고, 탕비실 등	
독립공간	창업사무공간 15개	별동 3층

나. 만부마을 청년창업인큐베이터

- 위치 : 인천 남동구 만수로 120, 2 ~ 3층
- 규모 : 2층(144.71m²/43.77평), 3층(143.64m²/43.45평)
- 주요시설 및 용도

구분	주요시설	비고
2층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가
독립공간	창업사무공간 4개, 운영사무실 1개	
공유공간	공유OA, 공유주방	
회의/기타공간	회의실, 창고, 수납공간 등	
3층	여성친화창업공간	여성창업가
독립공간	창업사무공간 4개	
회의/기타공간	회의실, 창고, 공유주방 등	

② 위탁사무내용

○ 입주자 관리 및 멤버십 회원 모집·운영, 홈페이지 관리

- ☑ 입주자 공개모집 및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유망 청년창업가 입주관리
- ☑ 꿈마을교육실, 커뮤니티센터, 공유회의실 등을 활용한 청년 멤버십 모집 관리
- ☑ 홈페이지 및 홍보 관리(위탁사업비 내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포함)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무료운영원칙)

- 남동구 지역 청년 예비 취·창업자들이 창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주자 및 멤버십 회원 우선)

- ☑ 창업관련 멘토링 풀 구축 및 이용자 멘토링 실시
- ☑ 창업 기본교육 및 분야별 교육
- ☑ 스타트업 네트워킹데이, 회원 간 커뮤니티 운영 지원
- ☑ 창업 특강 및 커뮤니티센터 행사 프로그램
- ☑ 투자 유치 프로그램
- ☑ 기타 사업자가 제안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운영 및 관리 전

-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출
 - ※ 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 수선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시설물의 대규모 수선비는 남동구에서 부담
- ☑ 시설 내 대관 문의 응대, 현황 관리 등
- ☑ 시설물 청결 및 하자 관리
- ☑ 시설 안전에 대한 사항 항시 점검 등 (체크리스트, 일지 등)
 - ※ 전기, 소방, 영조물 등 안전관리 철저 및 시설·인력 운영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각종 가구, 비품 손상여부 파악 등

IV. 사업자 선정 추진계획

1 수탁기관 공개모집

□ 추진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면심사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	위탁운영
1.6~1.31		2.1~2.10		2.20(예정)		2월 말		3월 중		23. 4. 1. ~ 24. 12. 31.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3. 1. 6.(금) ~ '23. 1. 31(화)(26일)
- 접수기간 : '23. 1. 30.(월) ~ '23. 1. 31.(화)(2일)
- 공고방법 : 남동구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목록

- 위탁운영 참가신청서, 기관(법인·단체) 일반현황, 대표자 이력서 각1부
- 서약서, 보안각서, 확인서, 청렴이행 서약서, 위임장 각 1부
- 기술능력 평가자료 각 1부
 - ➡ 재무상태 집계표, 최근년도 손익계산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조직 및 인력구성, 인력구성원의 자격 및 경력 현황, 창업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실무능력 평가 자료 10부(원본1, 사본9)
 -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청년(만19세~39세) 대상 활동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실적이 있거나 시설 운영 실적이 있으며, 남동구 청년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관(법인)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검토결과 자격 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 적격자심의제외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자는 우리구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남동구 조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기관 현장 확인으로 공모 참가신청 법인·단체 등의 실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사전 배제

② 수탁기관 선정

- 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추진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
 - 구성인원 : 7명(위원장 1명 포함, 6명이상 9명이하)
 - ▶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구분	인원(명)	위촉대상	추천기관
관련 전문가	5	창업 관련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창업관련 학과교수 또는 전문가
관계 공무원	2	남동구 소속 공무원 (1명), 타기관 공무원(1명)	-

- 심사위원 추천의뢰 기관
 - 학 계 :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산업폴리텍대학교 등
 - 기 타 : 청년창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추천 의뢰
- 심사일시 : '23. 2. 20(월) 예정
- 심사방법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10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발표순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순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하여야 함
 -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위원별 심사평점

□ 선정기준

-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의위원회 대면심사 진행
 - 1차 심사(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하여 자격요건 및 허위사실여부 등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서류 심사
 - 2차 심사(실무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
 - 1차 심사 점수가 고득점 순 상위 4개에 포함된 사업신청자 대상 (상위 4번째 기관이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모두 심사)

- 사업신청자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면접심사 진행
 - ↳ 사업제안 PPT 설명 10분, 질의 답변 10분
 - ↳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사업신청기관의 관계자는 3인 이내이며, 제안 설명 순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순
 - ↳ 2차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평가결과 비공개
- 심사 및 선정 : 총 100점(가감점 10점 별도) 기준 고득점 순 선정
 - 각 심사항목은 독립적으로 배점(타 심사항목 연관 안됨)
 - 기술평가(30점)와 실무능력평가(70점), (*신규)안전관리능력평가(배점10점/감점10점)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단,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실무능력 평가점수 고득점 순
 - ↳ (*신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수탁업체 평가기준 마련
 - [일자리정책과-12567(2022.6.21.)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위탁 기준 마련]
 - 합산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법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약체결
 - 우선순위 기관 협약 포기 시 차순위자로 협약
 - ※ 단, 사업 신청자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1개 업체만 신청할 경우 적격심사 실시 후 수탁여부 결정
 - 심사 시 논의내용,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 심사기준(항목) 및 배점표

구분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30)	소 계		30
	사업수행 능력	법인(단체)의 재정 부담능력(재정 건전성, 자산보유 현황 등)	10
		○ 자기자본비율	5
		○ 유동비율	5
		사업참여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현황	10
		○ 사업 참여 직원 수	5
		○ 참여직원 창업 관련 자격 및 경력자 현황	5
		최근 3년간 창업지원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10
		○ 최근 3년간 창업지원 사업 추진실적	5
		○ 최근 3년간 창업지원 사업 예산액	5
실무 능력 평가 (70)	소 계		70
	사업추진 능력 (독창성, 추진 가능성, 발전가 능성)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특화 운영 방향 비전 제시	10
		프로그램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가능성, 발전가능성)	10
		시설유지 및 운영관리 방안 (적정성, 추진가능성)	10
		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시설 활성화 계획	10
		예산집행 수익 창출 계획의 효율성 및 투명성(사업비 증대 방안)	10
		시설 이용자 창업 성공 실적 제고 방안(교육, 마케팅, 판로개척 등)	10
		사업수행 운영 의지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합 계		10점 / 감점10점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지정(1) 미지정(0)
	○ 안전관리비용 예산 반영	적정(2) 미흡(0)
안전관리 매뉴얼현황	○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적정(2) 미흡(0)
재해대응 체계현황	○ 재해신고 절차 매뉴얼 마련	적정(1) 미흡(0)
	○ 재해대응 조직 또는 업무분장	적정(1) 미흡(0)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적정(1) 미흡(0)
교육 및 훈련계획	○ 안전 교육 및 훈련계획 작성	적정(2) 미흡(0)
중대재해 발생 및 행정처분	○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횟수	0회(0) 1회(-5) 2회 이상(-10)

③ 협약체결

□ 위·수탁협약 체결

- 기 간 : 2023. 3월 중
-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을 조정한 후 협약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약체결
 -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V. 위탁예산(안)

□ 위탁사업비 : 363,600천원 범위내

(단위:천원)

구분	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비고
2023 사업비 합계(㉠+㉡+㉢+기타)			363,600	
기타(수수료 및 세금)			52,707	
㉠ 인건비	인건비소계		168,088	
	인건비	인건비	센터장(포함/미포함), 직원 5명 *9월	121,650
		제수당(시간외)	시간외수당 등	13,805
		4대보험	건강, 장기요양, 고용, 연금	17,100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5,533
㉡ 운영비	운영비소계		113,305	
	운영비	관리비 및 공공요금	7,000,000원*9월	63,000
		무인경비	495,000원*9월	4,455
		임차비	1,100,000원*9월	9,900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350,000원*9월	3,150
		일반수용비	2,000,000*9월	18,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0,000*9월	1,800
		물품구입비	5,000,000	5,000
		시설장비유지비	3,000,000	3,000
		홍보비	5,000,000	5,000
㉢ 사업비	사업비 소계		29,500	
	청년창업 역량강화	초기 창업 교육	세부내역 업체 제안 예정	2,500
		창업역량강화 교육	"	5,000
		기타 특화사업 등	"	3,000
	청년 네트워킹 활성화	청년의 날 행사	"	8,000
		입주기업 성과공유회	"	8,000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	3,000

※ 재위탁 예산 :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외 남은 위탁금액으로, 사업계획 조정 시 변동 가능

VI. 행정사항

-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23. 1. 20.한
- 구의회 재위탁 보고 : '23. 2월 중
- 위탁기관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 '23. 3월 중

붙임 1.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부. 끝.

[관련 법률]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창업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6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2. 3.
3. 처분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2. 3. ~ 2023. 2. 1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 반 음식점	2002-0199909	똥보아저씨네 해물,아구	김**	남동구 호구포로 911, 2층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0-29	2023-02-03
일 반 음식점	2012-0200123	빠아또	박** 곽**	남동구 성말로 9, 301호 (구월동, 이노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6-30	2023-02-03
일 반 음식점	2013-0199049	길라이브	윤**	남동구 경인로 744, 지하1층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0-31	2023-02-03
일 반 음식점	2015-0200150	조마루감자탕	여**	남동구 선수춘공원로23번길 10-22, 201호(구월동, 경애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0-24	2023-02-03
일 반 음식점	2016-0199710	더(THE)도툼	김**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17, 206,207호(서창동, 스키아플러스)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5-31	2023-02-03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2023. 2. 3.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7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3. 02. 21.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2. 6. ~ 2023. 2. 2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 음식점	2021- 0202811	송가육회 구월직영점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61-42,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12-05	2023-02-2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3. 2. 2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3. 2. 6.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80호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6.

남 동 구 청 장**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실의 설치 및 적정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민원봉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 453-2433 FAX 453-5691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2. 7. 11.),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1조~제3조)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5조)
-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6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부터 제9조의6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1부터 제2조의3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일: 2023. 4. 1.] 제8조의3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8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및 압류 예고 통지 (2차)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 2. 6.

남 동 구 청 장

-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및
압류 예고 통지 (2차)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3. 02. 06. ~ 2023. 02. 28.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제1항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적용
- 당사자 및 체납 과태료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주식회사 토향	주식회사 토향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7, 가주프라자 5층 502호 (구월동)	2021년 기존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납부금액 208,400원 (과태료 200,000원 + 가산금 6,000원 + 증가산금 2,400원)

5.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납기일자(23. 02. 28.)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태료는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etax.incheon.go.kr>)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60개월동안 최고 72%)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규정에 의거 재산(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청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 (☎032-453-2622)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85호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본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직명 표기 및 단순 . 반복적인 조례개정 방지를 위해 계속 현행화해야 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조문 및 서식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 정비(제8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 “발급대상자 명단” → “발급대장”으로 변경
- 「남동구 상징물 관리조례」 개정(2021.10.1.시행)에 따라 폐지된 남동구 도시 브랜드 등을 삭제하고 심벌마크로 변경(별지 제2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이 표기되어 있는 할인이용권이「공직선거법」제112조에

위반 소지가 있고 부서명칭 및 담당자 등이 변경될 때마다 현행화해야 하는 효도카드 서식 변경(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 453-5853, FAX 453-58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본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직명 표기 및 단순·반복적인 조례개정 방지를 위해 계속 현행화해야 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조문 및 서식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 정비(제8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 “발급대상자 명단” → “발급대장”으로 변경
- 「남동구 상징물 관리조례」개정(2021.10.1.시행)에 따라 폐지된 남동구 도시브랜드 등을 삭제하고 심벌마크로 변경(별지 제2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이 표기되어 있는 할인이용권이「공직선거법」제 112조에 위반 소지가 있고 부서명칭 및 담당자 등이 변경될 때마다 현행화해야 하는 효도카드 서식 변경(별지 제5호서식)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발급대상자 명단”를 “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효도카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참여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안내표지]



※ 규격 : 가로 13cm × 세로 13cm

[별지 제4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대상

《 동 》

[illegible]

[별지 제5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번호 : 남동구		동 (제 - 호)	
효도카드			
성명		생년월일	사진부착 (25mmx30mm)
주소			
연락처			
이 어르신은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로대상 어르신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			

《 앞 면 》

※ 사진부착란 왼쪽하단에 효도카드 발급 담당자 간인

유의사항
1. 효도카드 참여업소 표지판 부착업소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였으니,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효도카드 참여업소」 스티커 부착업소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 시 불편하신 사항은 거주지 해당 동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뒷 면 》

※ 규격 : 가로 9cm × 세로 5cm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① (생략)	제8조(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 발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발급대상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1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3.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번길 41-3 (만수동)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8-25, 918-2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41-3 (만수동)	2009.11.16.	구월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2.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말로58번길 41-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1-3을 건물번호로 부여	